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8. 20.

발 의 자 : 박광온 · 전해숙 · 이낙연
이장섭 · 임호선 · 홍성국
윤영찬 · 김진표 · 송갑석
김영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.

하지만,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,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 등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“필수예방접종 및”을 “필수예방접종, 제24조의2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26세 이하 여성 및 만 18세 이하 남성에게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

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26조 본문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, “필수예방접종 또는”을 “필수예방접종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나”로, “특별자치도지사 또는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, “필수예방접종 및”을 “필수예방접종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나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
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“필수예방접종 및”을 “필수예방접종, 제24조의2에 따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광역시”를 “광역시·특별자치시”로 한다.

제36조제5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1조제1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6조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

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, “있으면 특별자치도”를 “있으면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64조의 제목 중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24조제1항 및”을 “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항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24조제2항 및”을 “제24조제2항, 제24조의2제2항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·제8호의2·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66조 중 “특별자치도는”을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”으로 한다.

제69조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	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특별시장· <u>광역시</u> · <u>도지사</u> ·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③ ----- <u>광역시</u> · <u>특별자치시장</u> · <u>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생략)	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<u>필수예방접종</u> 및 제25조의 <u>임시예방접종</u> 에 사용되는 의약품(이하 “필수예방접종약품등”이라 한다)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	6의2. ----- ----- <u>필수예방접종</u> , 제24조의2의 <u>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</u> 및----- ----- ----- -----

6의3. ~ 11. (생 략) 제13조(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)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하 “필수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1. ~ 15. (생 략) 16. <u>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</u> 17. (생 략) ②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	----- -- 6의3. ~ 11. (현행과 같음) 제13조(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17. (현행과 같음) ②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</u>
--	--

· 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<신 설>

지사-----

-----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-----.

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26세 이하 여성 및 만 18세 이하 남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

제25조(임시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2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(생략)

제26조(예방접종의 공고) **특별자치도지사**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, 예방접종의 종류,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

의 위탁에 관하여 제24조제2항
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
시기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임시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
사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예방접종의 공고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(예방접종증명서) ① 질병관리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

-----.

-----.

제27조(예방접종증명서) ① -----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-----필수예방접종,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또는

-----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나-----
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-----또는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

제31조(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「학교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

제31조(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있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은 「유아교육
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
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
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
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
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
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
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, 학생
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
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
야 한다.

제33조의2(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
비축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
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
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
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
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
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
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

-----.

②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
지사-----

-----.
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
지사-----

-----.

제33조의2(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
비축 등) ① -----

-----필수예방접종
및, 제24조의2에 따른 사람유두
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및

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35조(시·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) ① (생 략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 략)

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시·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광역시·특별자치시-----

-----.

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-----.

⑥ (생 략)

제51조(소독 의무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52조(소독업의 신고 등)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(제5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)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

⑥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소독 의무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소독업의 신고 등) ① ---
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
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(이
하 “소독업자”라 한다)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
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
본다.

1. ~ 3. (생략)

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은 제3항에 따
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
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
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
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
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
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3조(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)

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
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
-----.
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
지사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
지사-----

-----.

-----.

제53조(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)

① -----

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제56조(소독업무의 대행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7조제5호, 제48조제1항, 제49조제1항제8호·제9호·제13호, 제50조 및 제51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57조(서류제출 및 검사 등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
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. 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제56조(소독업무의 대행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제57조(서류제출 및 검사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
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
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
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8조(시정명령) 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
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
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
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제59조(영업정지 등) ① 특별자치
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
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
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
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
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
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시정명령) 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영업정지 등) ① 특별자치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-----

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2조(예방위원) ① 특별자치도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
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
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
한다. 이하 같다)에 감염병 예
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
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다만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4조(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

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, typical of primary-ruled notebook paper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.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2조(예방위원) ① 특별자치시
장 · 특별자치도지사-----

-----있으면
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-----

② _____
_____. _____특별자치
시 · 특별자치도 _____

_____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4조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)

가 부담할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한다. 1. (생 략) 2.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.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.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드는 경비 5.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·운영에 드는 경비 6. (생 략) 7. 제47조, 제48조, 제49조제1항 제8호·제9호·제13호 및 제	·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항 및----- 3. 제24조제2항, 제24조의2제2항 및----- 4. 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 5. -----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-----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
--	---

51조제1항에 따라 <u>특별자치도</u> ·시·군·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	----- <u>특별자치시</u> · <u>특별자치도</u> ----- ----- -----
8.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·의료업자·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·치료비 또는 조제료	8. ----- -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
8의2.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, 연수원·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	8의2. ----- -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
9.·10. (생략)	9.·10. (현행과 같음)
10의2.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	10의2. -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
10의3.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탁하여 관	10의3. -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

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	----- ----- -----
11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<u>특별 자치도</u>·시·군·구가 실시 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 요한 경비	11. -----<u>특별 자치시·특별자치도</u>----- ----- -----
제66조(시·도가 보조할 경비) 시 ·도(<u>특별자치도는</u> 제외한다)는 제64조에 따라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하여야 한다.	제66조(시·도가 보조할 경비) -- ----<u>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9조(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) <u>특별자치도지사</u>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 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 환 등으로 입원, 진찰,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 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	제69조(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) <u>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